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6년 4월 24일(금) 10시00분~11시00분

2. 장 소 : 이랜드글로벌R&D센터 1층 회의실

3. 회의소집 통지 내용

- 통지일 : 2026년 4월 16일(목)
- 통지대상 : 이사 8명, 감사 2명
- 통지방법 : 이사회소집 이메일 발송 및 유선 연락
- 회의목적 : 이랜드복지재단 이사 선임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임면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통합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목포이랜드재가센터 운영규정개정(안) 심의의 건.

4. 출석임원 : 장광규, 정영일, 최동주, 김광영, 이경림, 김상진 (이사 6명)
이천화 (감사1명)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정영일 대표이사가 재적이사 8명 중 6명(장광규, 정영일, 최동주, 김광영, 이경림, 김상진) 감사 2명 중 1명(이천화)이 참석함을 보고하니, 장광규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통과

정영일 대표이사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최동주 이사의 동의와 김광영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을 통과하다.

7. 안건보고 및 심의

<제 1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이사 선임의 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6호부터제7호에따라비공개함.

<제 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임면의 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6호부터제7호에따라비공개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6호부터제7호에따라비공개함.

이경림 이사의 동의와 김상진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임면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 3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심의의 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6호부터제7호에따라비공개함.

김상진 이사의 동의와 김광영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설장 무보수 겸직 심의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제 4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장광규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서성진 팀장은 보조금 및 후원금 수입 등 재원변동,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조정에 따른 증감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기관명	기정(A)	추경(B)	증감(B-A)
진도군노인복지관	1,933,017	1,942,556	9,539
봉화군노인복지관	3,927,659	3,960,681	33,022

최동주 이사의 동의와 이경림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 5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통합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장광규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통합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서성진 팀장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전라남도/경상북도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유급병가 기준 반영,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제10조~제13조, 제16조 제1항) 및 2024.9.23. 행정안전부훈령 제360호에 따른 매식비 인상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통합운영규정은 총 3개의 산하시설인 진도군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봉

원본대조필

화군노인복지관에 적용됨을 설명하다.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통합운영규정 개정(안)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인사관리규정	제68조(병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8조 (병가), 전라남도/경상북도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반영 일부 개정
재무회계규정	제5조(출장여비), 제6조(사내출장 여비)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제 10조부터 제13조 까지 및 제 16조 제 1항 관련)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 2024.9.23. 행정안전부훈령 제360호 매식비 인상에 따른 일부 개정

이경림 이사의 동의와 최동주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통합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제 6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목포이랜드재가센터 운영규정개정(안) 심의의 건

장광규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목포이랜드재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서성진 팀장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전라남도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유급병가 기준을 반영하여, 이랜드복지센터 산하기관인 목포이랜드재가센터 복무규정의 병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통합운영규정 개정(안)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인사관리규정	제27조(병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8조 (병가), 전라남도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반영 일부 개정 -이랜드복지센터 산하기관으로 동일 적용

김상진 이사의 동의와 이경림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목포이랜드재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원본대조필

8. 폐회선언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김광영 이사가 폐회 동의하고 이경림 이사가 재청하여 장광규 이사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의사진행과 결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폐회시각 11시 00분


2026년 4월 24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장 광 규 


대표이사 정 영 일 

이 사 최 동 주 

이 사 김 광 영 

이 사 이 경 림 

이 사 김 상 진 

감 사 이 천 화 



원본대조필 